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3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2. E

3. F

4. G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C, E은 연대하여 14,790,550원, 피고 F, G은 연대하여 2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E은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이고 피고 C은 법무법인 D의 직원이다.

나. 원고 A은 2017. 4.경 법무법인 D와, 원고 A이 H 등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 사건을 보수 880만 원으로 정하여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7. 4. 13. 법무법인 D에 보수 880만 원 및 소송비용 1,261,500원의 합계 10,061,5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면서 2017. 4. 17. 법무법인 D와 위 보수 중 240만 원을 반환받되 향후 상호 손해금 등을 청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법무법인 D는 2017. 4. 18. 원고 A에게 24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 A은 2019. 5. 31. 법무법인 D와, 원고 A이 H을 상대로 제기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을 착수금 440만 원, 인지 및 송달료 합계 329,000원에 위임하기로 하는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법무법인 D는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2019. 7. 2. 원고 A을 대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I로 H을 상대방으로 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 A은 위 사건에서 2020. 5. 27.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법인 D는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더는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을 기망하여 피고 C, E은 14,790,5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F, G은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 E에 대하여

원고 A이 법무법인 D와 2회에 걸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및 소송비용으로 합계 14,790,500원(= 1차 위임 보수 8,800,000원 + 1차 위임 소송비용 1,261,500원 + 2차 위임 보수 4,400,000원 + 2차 위임 인지 및 송달료 329,000원)을 법무법인 D에 지급하고 그중 2,4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C, E이 원고들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F, G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F에게 2016. 7. 5. 500만 원, 2016. 7. 15. 500만 원, 2016. 8. 1. 1,200만 원(600만 원씩 2회)의 합계 2,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 F, G이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인